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」

≪ 檢 討 報 告 書 ≫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

○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규정한 별표중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"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" 종목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은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.

□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

○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05. 2. 12 공포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

○ "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"의 1건당 발급수수료 500원은 유사한 종목인 "개별공시지가확인서"의 1건당 발급수수료 500원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5. 6

보 고 자 : 김 찬 재